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식대상자 선정 시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에 기증자 관리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식대상자 4순위 선정기준 중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을 “기증자가 발생하거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으로 변경하되, 기증자가 발생하여 그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한하도록 함(안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4순위: 기증자가 발생하거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 [2)의 단서 및 3)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 기증자가 발생하여 그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도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생 략) 1) ~ 3) (생 략) 4) 4순위: <u>기증자가 발생한</u> 이식의료기관[2)의 단서 및 3)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	[별표 5]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4순위: <u>기증자가 발생하거나</u> <u>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u> ---- ----- ----- -----<u>. 기증자가</u> <u>발생하여 그 기증자를 관리하고</u> <u>있는 기관도 등록된 신장 이식</u> <u>대기자 1명에 한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631